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1항의 “학사학위센터를 둔다.”를 “학사학위센터, 교양교육 센터를 둔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① 교무처에는 <u>학사학위센터</u> 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현행과 같음) ① ----- 학사학위센터, 교양교육센터를 둔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8조(구성) 제1항의 “10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교직원”을 “교직원(학교법인인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관련 전문가로”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u>10인</u> 이상으로 구성하되 <u>교직원</u> , 학생, <u>관련 전문가로</u>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학부모 및 동문위원이 위촉될 경우 그 총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제28조(구성) ① ----- 7인 ----- -- <u>교직원(학교법인인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u> , --, <u>관련 전문가 등으로</u> -----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원광보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2조(교육과정) 제3항의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목(K-MOOC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6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에 따라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 및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2조(교육과정) ① ~ ② (생략)	제32조(교육과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교육과목(K-MOOC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에 따라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 및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학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5조(교육과정) 제1항의 “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라 한다) 기반 교과목, 특화교과목으로 구분한다.”를 “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특화교과목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 제20조의2(학점인정) 제12항 “⑫ 외부강좌, 온라인강좌 및 봉사활동 교과목 등 강좌 형태에 따라 성적산정(100만점)이 불가한 경우 이수 P(Pass), 미이수 F(Fail)로 평가 한다.”를 신설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u>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라 한다)기반 교과목, 특화교과목으로 구분한다.</u> ② ~ ⑥ (생략)	제1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u>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특화교과목으로 구분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점인정) ① ~ ⑪ (생략) <항신설>	제20조의2(학점인정)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u>외부강좌, 온라인강좌 및 봉사활동 교과목 등 강좌 형태에 따라 성적산정(100만점)이 불가한 경우 이수 P(Pass), 미이수 F(Fail)로 평가 한다.</u>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구성) 제1항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구성) ① <u>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u> ② (생략)	제3조(구성) ① <u>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